

수의계약 사유서

1. 건 명 :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
국내 업사이클 디자인 현황 연구

2. 적용법규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5조 (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5항 바. 추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의 경우
- 재단 회계규정 제8장 73조(수의계약 집행기준) 5항 『건설산업기본법』에 의한 일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,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, 구매·용역·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
- 재단 회계규정 76조(견적에 의한 가격결정)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

3. 수의계약 사유

-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체결 가능범위
- 국내 업사이클분야 유통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, 여러 관련 사업 수행실적 및 업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높아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업체와 협의하여 비교 견적에 의해 가격경쟁이 우수한 본 사업자와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

4. 계약 대상 업체

- 업체명 : 주식회사 오브젝트생활연구소
- 대표자 : 유세미나
- 주 소 :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2-7, 3층(합정동)
- 전 화 : 010.9256.4354

2016. 11. 15

작성자 : 새활용플라자TF팀 선 임 이명은 (인)

확인자 : 시민디자인연구센터 센터장 신윤재 (인)

확인자 : 새활용플라자TF팀 TF장 강문석 (인)